

장해 분류표

각 장해율 ×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금이 결정되는 특약입니다.

세부 장해율은 각 보험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눈

한 눈이 멀었을 때 -50%
 두 눈이 멀었을 때 -100%
 한 눈 교정시력 (0.2~0.02 이하) -5~35%
 한 눈의 안구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-10%
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, 시야협착, 암점을 남긴 때 -5%
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-10%
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-5%

외모

외모에 뚜렷한 추상 (추한 모습)을 남긴 때 -15%
 외모에 약간의 추상 (추한 모습)을 남긴 때 -5%

체간골

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-15%
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-10%

팔

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-60%
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-5~30%
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-10~20%
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-5%

손

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-60%
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를 잃었거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-5~30%
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-10~20%
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-5%

다리

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-60%
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를 잃었거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-5~30%
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-10~20%
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-5%
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-30%
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-5%

일상생활 기본동작

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태 -30%
 순가락 사용 가능이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-10%
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옷을 챙겨 입거나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-10%
 배변,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-10%

치매

극심한 치매 -CDR5 점 (100%)
 심한 치매 -CDR4 점 (80%)
 뚜렷한 치매 -CDR3 점 (60%)
 약간의 치매 -CDR2 점 (40%)

귀

두 귀의 청력상실 -80%
 한 귀 청력상실, 다른 귀 청력장해 -45%
 한 귀 청력 장해 -5~25%
 한 귀의 귓바퀴 결손 -10%

코

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-15%

구강

씹어먹기/말하기 장해 -5~100%
 치아에 14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-20%
 치아에 7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-10%
 치아에 5 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-5%

척추(등뼈)

척추에 기형을 남긴 때 -10~50%
 척추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-10~40%
 심한 추간판탈출증 (속칭 디스크) -20%
 뚜렷한 추간판탈출증 (속칭 디스크) -15%
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(속칭 디스크) -10%

흉복부/비뇨생식기

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-20~75%

발

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-40%
 한 발의 5 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-30%
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-10%
 한 발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-3~20%

장해분류표 판정기준

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총칙

- *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
(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,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보험가입금액에 20%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)
- *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③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로 한다

눈

- *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.

외모

- *외모 란 얼굴(눈 코 귀 입 포함) 머리 목을 말한다
- *뚜렷한 추상(길이 10cm, 지름 5cm)
- *약간의 추상(길이 5cm, 지름 2cm)

체간골

- *‘체간골’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같은 부위로 한다.
- *기형: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팔

- *팔은 어깨관절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
- *팔의 3대관절은 어깨, 팔꿈치, 손목 관절을 말한다.

손

- *첫째 손가락의 중수지관절과 지관절로 나뉘고 나머지 4손가락은 중수지관절/금위지관절/원위지관절로 나뉜다
- *손가락을 잃었을 때는 지관절과 근위지관절 이하를 잃었을 때를 말한다.

다리

- *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.
- *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.
- *다리의 3대 관절은 고관절, 무릎관절, 발목관절을 말한다.

발

- *손가락과 같이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라 함은 지관절과 근위지관절부터 잃을 때를 말한다.
- *리스프랑관절을 잃은 때는 족근-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.

치매

- *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 한국판 (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) 검사결과에 따른다.

귀

- *청력장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로서 (dB: decibel) 표시하고 회 3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.

구강

- *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,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, 연하 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

- *‘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’ 라 함은 다음 종의 어음 4종 5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.

- ① 양순음 입술소리 ㅁ ㅂ ㅍ
- ② 치조음 잇몸소리 ㄴ ㄷ ㄹ
- ③ 구개음 입천장소리 ㄱ ㅈ ㅊ
- ④ 후두음 목구멍소리 ㅇ ㅎ

척추(등뼈)

- *척추는 경추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.
- *심한운동장해: 척추제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주제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
- *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은 특수검사(MRI, CT 등)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

흉복부/비뇨생식기

- *심한장해: 장기이식(심장, 폐장, 신장, 간장), 혈액투석
- *뚜렷한장해: 위, 췌장, 소장 일부소실, 고환/난소 모두 소실
- *약간의장해: 비/신/폐장 일부절제, 음경1/2결손, 질구협착



보험 영업의 좋은 습관, 모홈

지금 바로 모홈 앱을 다운받고 무료체험을 경험하세요!

- ✓ 보험조회/청구가 되는 설계사 개인 홈페이지(모바일 명함)
- ✓ 매일 제공되는 보험 뉴스와 전문 콘텐츠
- ✓ 부가 수입 창출을 위한 상품 판매 수수료 제공
- ✓ 고객 사은품 건강 검진권 매월 2장 제공
- ✓ 설계사 영업 자료 수시 제공
- ✓ 전보험 사약 관통합 검색 무료
- ✓ 콜백 자동 문자 무료



Android



iOS